

학생 불응시 성적인정 안내

1. 불응시 성적인정 절차

- 가. 불응시 성적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하여야 함
- 나. 학생은 <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> 양식에 불응시 과목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(학부)행정팀에 제출
※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 양식은 p.3 참조 (포털(KUPID) 지식관리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다. 소속 대학(학부)행정팀에서는 접수한 <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서>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학사팀에 제출 (결재선: 학(부)장 전결)
- 라. 불응시과목 담당교수는 중간시험, 기말시험, 임시시험, 과제물 등의 평가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

2. 증빙 서류

- 가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외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
- 나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
- 다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
- 라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- 마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
3. 불응시 성적인정 여부 결정

학생의 불응시 성적인정 요청에 대한 처리 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름

4. 관련 규정

- 가. 「학칙」 제45조 제2항

제45조(응시자격과 성적인정)

- ① <생략>
- ② 병역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나.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9조 및 제70조

제69조(불응시 인정점수: 신고)

- ① 병역,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(학부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0조(불응시 인정점수: 제출서류)

-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
 2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
 3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
 4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③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며, 성적이 이미 확정된 경우 해당 성적을 취소한다. <신설 2022. 1. 1.>

다. 「출석 인정 지침」 제2조

제2조 (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)

- ① <생략>
-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「학사운영규정」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.
-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.

